

January 23, 2020

Legal Update

2020 개정세법 주요내용(소득세 분야)

1. 임원 퇴직소득 한도 축소(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임원의 퇴직금 중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바, 종전에는 아래의 산식에 따라 그 한도를 계산하였습니다.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x 1/10 x 2012년 이후
근속연수 x 지급배수(3)」

그런데 개정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은 2020. 1. 1. 이후의 적립분에 해당하는 임원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지급배수를 2배로 하향 조정하여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축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0. 1. 1.부터 임원 퇴직금에 대한 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부동산 등 비율 계산방식 개정 (소득세법 제94조,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 제158조 제7항)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한 부동산 등 비율은 법인의 자산총액 중 ①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②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자회사 등)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 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합니다.

종전에는 위 ②의 계산에 있어 ‘다른 법인의 부동산 등 보유비율’은 다른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하였는데, 입법예고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제158조 제7항에 따르면 2020. 7.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다른 법인의 부동산 등 보유비율 계산시 다른 법인이 경영지배하는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손자회사 등)이 발행한 주식가액에 해당 경영지배관계 법인의 부동산 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계산방식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판단기준으로 손자회사가 보유한 부동산까지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대한 과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예컨대, 일반법인의 경우에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나,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에는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환산취득가액가산세 대상 확대 및 감정가액가산세 신설 (소득세법 제114조의2 제1항)

건물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8년부터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분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하는 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그 이후 2019년 개정 소득세법 제114조의2는, ① 위와 같은 신축에 더하여 바닥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증축”하는 경우 및 ② 위와 같은 환산가액에 더하여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가산세 부과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종전 소득세법이 환산취득가액가산세 규정을 2018. 1. 1. 이후 발생하는 양도소득부터 적용하도록 하면서 입법 전에 이미 신축되었으나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건물도 과세 대상으로 삼은 것에 대해서 위험적인 소급 입법이라는 비판이 있었던바,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아울러 취득가액의 5%나 되는 무거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 및 환산취득가액가산세 규정 신설 이전에 신축되었으나 해당 시점에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건물의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환산취득가액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관한 문제제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4.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양도소득의 손익통산 인정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 제104조 제1항 제12호 등)

종전에는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을 구분하여 각각 양도손익을 계산하였고, 상호 간에 손익통산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다만 양도소득기본공제(250만 원)는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각각에 대하여 적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정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 등은 2020. 1. 1. 이후 주식을 양도하는 분부터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양도손익 통산을 허용하는 한편, 양도소득기본공제(250만 원)는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양도손익을 합산한 다음 한번만 적용되도록 체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이로써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중 어느 한 쪽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하고, 다른 한 쪽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양도차익에서 양도차손을 공제하지 못하여 세부담이 커지는 불합리한 결과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분리과세소득 경정청구권 확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

종전에는 분리과세소득만 있는 자에 대해서는 경정청구가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원천징수세액을 과오납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정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은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해서도 원천징수의무자 및 원천징수대상자의 경정청구를 허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분리과세소득에 관하여 과오납한 세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의 권리구제수단으로 경정청구가 새로이 인정되었고, 원천징수의무자뿐만 아니라 원천납세의무자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경정청구에 대한 과세관청의 거부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6. 기타 주요 개정내용

가. 중소기업 접대비 필요경비 산입 확대(소득세법 제35조 제3항)

- 중소기업의 접대비 필요경비 산입 기본한도를 2,4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수입금액별 한도금액을 산출할 때 수입금액에 적용하는 적용률을 수입금액이 100억 원 이하인 경우 1만분의 20에서 1만분의 30으로 상향조정함

나. 근로소득공제액 한도 설정(소득세법 제47조 제1항 단서)

- 근로소득금액 계산 시 총급여액에서 차감하는 근로소득공제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다. 기부금영수증 부실기재 가산세(소득세법 제81조의7 제1항 제1호)

-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에 대한 가산세율을 100분의 2에서 100분의 5로 인상

라. 계산서합계표 등 관련 의무부담자의 범위 확대(소득세법 제81조의10)

- 계산서 및 계산서·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의무수범자 및 가산세 부과대상을 복식부기의무자에서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로 확대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비사업자를 가산세 부과 대상에 추가함(각각 2021년 1월 1일 이후 분부터 적용)

마. 연금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4)

- 연금의 실제 수령연차와 연계한 연금소득의 세부담 완화를 통하여 장기간에 걸친 퇴직연금 수령을 유도하기 위하여 10년을 초과하여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60으로 인하함(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3)

노후 대비 필요성이 큰 50세 이상 거주자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해서 세액공제 한도를 200만원 추가함(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4)

바.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제1항)

- 벤처기업 우수 인재 유입 촉진을 위하여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를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코넥스상장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도 적용하고, 비과세 한도액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ntacts



김현진
파트너변호사

☎ 02-316-4246

✉ hjikim@shinkim.com



이민현
파트너변호사

☎ 02-316-1639

✉ mhylee@shinkim.com



이남주
공인회계사

☎ 02-316-4675

✉ njlee@shinkim.com



박기범
소속변호사

☎ 02-316-4251

✉ gbpark@shinkim.com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